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6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

1. 관련

가.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

나.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6. 1.21.)

2. 「2016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각 사업단 및 소속 기관에서는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2016년도 기획재정부 일반지침 주요 개정내용

- o (경제활력 강화) 선제적인 재정조기집행(상반기 58%)
- o (알뜰한 나라살림) 항공마일리지를 정부단위 단체 구매권한으로 변경
- o (출연기관 비정상 관행 개선) 용역비를 업무용역비와 정책연구비로 세분화
- o (기타 비목별 지침) 연가보상비 자체 이·전용 제한 등

나. 「2016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 주요내용

- o (기본 지침)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 5대 원칙 준수 철저
 - 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함(국가재정법 제16조)
 - ②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(국가재정법 제45조)
 - ③ 우정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
 - ④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 집행 금지
 - ⑤ 예산 집행절차 준수
 - o (일반 지침) 비목별 집행 방향 개선 및 소요비용 현실화
 - (사업추진비) 사업별 분과위원회 등 중요회의 소요비용 현실화, 사업추진 위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가능(회의결과 보고서 첨부)
 - (관서업무비) 대민·대유관기관과의 긴급한 업무 협의 시 사후결재 가능
 - (포상금) 포상 절차 준수, 포상금 예산을 사업추진 성격으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기관포상으로 지출한 후 공금계좌* 관리
- * 포상받은 수상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별 하부지침으로 규정(각 사업단)

다. 「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 책자 편집 방향

- o 기획재정부 내용을 기본으로 수록하되, 우정사업본부 자체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BOX표기로 강조

※ 전년 대비 개정사항과 우정사업본부 자체 규정은 붙임화일에 파란색으로 표기

붙임 「2016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」 1부. 끝.

우정사업본부장



수신자 우편사업단장, 예금사업단장, 보험사업단장, 감사담당관, 운영지원과장, 경영총괄담당관, 홍보담당관, 경영성과정보팀장, 노사협력팀장, 우직/청/우도/공도

주무관	김대주	행정사무관	변주용	재정기획담당관	이영훈	경영기획실장	이병철
본부장	01/27 김기덕						
협조자							

시행 재정기획담당관-282 (2016.01.27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www.koreapost.go.kr
전화 [044-200-8134](tel:044-200-8134) /전송 044-200-8091 / binzip@koreapost.go.kr / 공개